

0010. 이사회 규정

1967. 01. 01. 제정
2001. 12. 31. 개정
2008. 05. 03. 개정
2009. 03. 04. 개정
2011. 02. 22. 개정
2012. 03. 21. 개정
2016. 05. 03.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OCI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 ②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 유고시, 이사로 먼저 선임된 이사가, 선임된 일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3 장 회 의

제6조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사회에서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의 소집은 회일 3일전까지 각 이사에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9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상법 제397조의2(회사 기회 유용 금지) 및 제398조(자기 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의 소집, 영업보고서의 승인, 재무제표의 승인
- 나. 정관의 변경
- 다. 자본의 감소
- 라. 회사의 해산, 합병(피합병 포함),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마.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
- 바.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사. 이사의 보수, 선임 및 해임
- 아.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차. 주식배당 결정,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주식의 소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카.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への 보고
 - 단일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업연도 중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 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위임사항 등
- 파.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

2. 경영에 관한 사항

- 가.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다. 공동대표의 결정
- 라.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마.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 바.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
- 사. 공장 및 해외 현지법인(회사가 직접 출자한 회계상 연결 대상인 법인)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다만, 지점, 사무소, 출장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는 경영위원회에 위임함
- 아.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자.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차. 준법지원인 임면 및 준법통제기준 제·개정

3. 출자 및 투자에 관한 사항

가.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15 이상의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함. 이하 같음)

나.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15 이상 또는 당해법인의 지분이 30% 미만인 되게 하는 출자지분의 처분

다.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신규시설 투자, 시설증설, 별도 공장의 신설

라. 사업계획 심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출자 및 투자 등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

4.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요한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의 양수도, 기술도입 및 이전, 기술제휴에 관한 사항

5. 신주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의 부여

6. 사채의 발행. 다만,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종류 및 금액을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7. 준비금의 자본전입

8. 결손의 처분

9. 일정액 이상의 자금차입 및 보증행위. 다만, 그 기간연장 및 금융기관 변경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가.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차입 및 여신한도 약정 체결

나.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15 이상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다.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자금차입 및 보증행위

10.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및 질권의 설정. 다만, 차입조건에 따라 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회사의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

가. 국내계열회사와의 단일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거래(자금·유가증권·자산의 제공)

나. 국내계열회사와의 분기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거래(상품·용역 제공)

12. 이사에 관한 사항

가.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나. 타회사(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원 겸임

13. 기 타

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나. 전무 이상 재직 후 퇴임한 전 임원의 고문 선임

다. 전무 이상 미등기임원의 신규선임 또는 승격

라.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단 3호 및 9호의 이사회가 기승인한 건을 해당 호 승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미만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대 실적 현황
2.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사업계획 대 실적 현황(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자회사 및 관계회사는 제외)
3. 출자 및 투자 현황
4. 차입금 및 보증 현황
5. 주요 신제품의 개발 및 출시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연간 채용계획
7. 급여체계, 상여, 복리후생제도 및 인센티브 제도 주요 변경 사항
8.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9. 투자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관한 사항
10.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1. 손해배상 청구 등 중요한 소송의 제기, 확정
12. 벌금, 과태료 또는 추징금 등의 부과
13.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의 발생
1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 결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정한 결의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는 재의결할 수 없다.

⑥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 (위원회 의결의 효력)

- ①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②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재결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는 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결의사항이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의사록은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간사)

-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기획담당임원 또는 기획담당부서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의사록 작성을 포함하는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제17조 (규정의 개정 및 우선적 효력)

- ①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② 각 위원회의 규정이 이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이 규정이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